

예 산 총 칙

2026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비회계를 등록금 재원으로 구성된 ‘등록금회계’와 그 외 재원으로 구성된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본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및 중장기재정운영계획을 연계한 예산편성 요령에 의거하여 편성한다.

1. 자금예산의 규모

- 가. 등록금회계 수입·지출 : 각 78,527,250,286원
- 나. 비등록금회계 수입·지출 : 각 39,355,484,879원
- 다. 교비회계 수입·지출: 각 117,432,735,165원 (※ 내부거래 금액 450,000,000원 제거)

2.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 가. 적극적인 기부금 유치, 국가 및 지자체 재정지원사업 수주 및 외국인 학생 확대 모집 등 교육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수익구조를 확보하여 경영 능력을 제고한다.
- 나. 긴축재정을 원칙으로 하며,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억제하고 낭비를 제거한다.
- 다. 재무회계 관련 법령과 규칙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을 준수한다.

3. 주요사업계획의 개요

(단위: 원, %)

관	금액	구성비
보수	39,629,485,826	33.75%
관리운영비	19,249,545,588	16.39%
연구·학생경비	47,735,240,417	40.65%
교육외 비용	371,533,910	0.32%

관	금액	구성비
예비비	333,099,752	0.28%
투자외기타자산지출	1,015,000	0.00%
고정자산매입지출	8,211,513,700	6.99%
유동부채 상환	594,210,972	0.51%
고정부채 상환	1,307,090,000	1.11%
계	117,432,735,165	100.00%

4. 장기차입금의 한도액: 20,000,000,000원

5.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4,000,000,000원

6. 국가장학금 II 유형 참여

-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이 시행하는 국가장학금 II 유형 사업에 참여하며, 책무 이행 및 반환 등의 기준은 협약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

7.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한다.

나.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3조제1항에 의거 동일 관내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그 사유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지정된 항목의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다.

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 및 예산초과지출 항목 발생 시 충당한다.

마.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확정된 예산에 추가 변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8. 수입·지출 예산의 명세서는 붙임과 같다.